

육백산수종개신을 위한 임목벌채사업 전면철회 및 요존국유림해제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187
------------	-----

발의년월일 : 1995. 7.

발의자 : 전세영의원 외 7인

1. 주 문

최근 산림청에서 산지의 효율적이용과 경제립 조성을 목적으로 우리 삼척시에 소재하고 있는 육백산일대 천연림 25,179ha에 대한 수종개신사업추진 및, 가곡면 중봉산, 하장면 청옥산일대 16,910ha에 대한 수종개신사업 확대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정부의 일관성없는 산림정책에 대한 10만 삼척시민들의 원성이 심화되고 있어, 만부득히, 천연림보존과 지역개발촉진을 위하여 육백산 수종개신을 위한 임목벌채사업 전면철회 촉구 건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산림청에서 수종개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지역은, 정부에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수백년생의 참나무, 자작나무등의 활엽수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을만큼 자연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고산지대 특유의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 어느지역에서도 서식치 않는 산당귀, 동자꽃, 하늘나리등 초화류와 토끼, 다람쥐등 희귀 야생동식물의 주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산특유의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온 육백산일대의 천연림을
절대로 훼손시켜서는 안 될 만큼 보존가치가 높은 요존국유림이라며

그동안 탄전지역회생을 위하여 지역내 사회단체나 주민들이 끊임없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산림훼손 규제완화건의, 개발촉진지구
지정면적확대건의, 경동탄광, 명성그룹등 민간기업체의 개발계획을
집수하였으나, 천연림보호를 명목으로 적극반대에 앞장서 온
산림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불변으로만 느껴졌던 산림청의 천연림보호 정책이,
자연생태계 보존, 주변환경문제에 대한 사전 치밀한 검증과
이해관계지역 주민들의 여론수렴 과정도 없이,

8개월동안의 짧은기간동안 출속적인 수종갱신사업 계획입안 및
정책결정과정을 거쳐서 학계, 각종환경단체, 지역 주민들이 굳이
반대하는 수종갱신사업을 밀어 붙이기식으로 강행 추진하는것은,
민의를 무시한 정부의 횡포라고 지역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것은, 천년을 두고 자라온 천연림을 완전히 삭발
하고 경제성이 희박한 낙엽송, 잣나무등으로 대체조립을 한다는것은
거시적인 경제시책은 물론 산림시책의 이론에도 맞지않는 국고 낭비
일뿐만 아니라

수종개신을 위한 입목벌채사업 종료후의 경영사업비나 수종개신대상등 기본계획조차 미비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더더욱이 정부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획일적이고 무계획적인 사업추진 과정에서, 노곡면 상마읍리 육백산일대의 기존 입목벌채지 3만3천여평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입목반출을 위해 개설한 입도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근덕상수원으로 유입되어, 주민집단반발이 일어나는등 도치에 주민원성이 내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삼척시를 포함하여 인근 태백시, 정선군도 탄광지역경기의 장기적 침체로 지역공동화 현상까지 발생하여 지역존폐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지역 주민모두가 생존권보호 차원에서 육백산 관광지 개발에 지역발전의 사활을 걸고 있을만큼, 육백산이 지역발전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심히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 삼척시에서도 육백산 개발을 위하여 민자유치등 지역관광개발과 연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통상산업부가 폐광지역개발촉진을 위하여, 강원도와 이해관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탄전지역개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갖는등 제정 준비중 입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산림훼손의 절대 불가성을 주장해 온 산림청이, 이에 배치되는 무모한 수종개신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본격적인 육백산개발사업 착수시 기 수종개신사업에 투자된 막대한 국가예산을 사장시킬수 없다는」 평계로 주민들이나民間기업체가 요구하는 육백산 개발계획을 지연시키거나 개발을 제한하는 구실을 남겨놓기 위한 행정행위로 밖에 귀결 지울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산림청이 지역회생에 사활을 걸고 있는 폐광지역에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제도적인 뒷받침은 못할지언정, 이들 지역주민들의 지역개발 의지에 반하여, 무모하게 강행 추진하고 있는 육백산일대 수종개신사업은 전면적으로 재집토 칠회되어야 하며, 요존 국유림도 반드시 해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림이 당해 지방자치 단체에 소재할 경우 「지역입입경제권」의 개념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가 주민소득, 지역개발등 공익과 연계하여 국유림을 사용하고자 할 시에는 자유롭게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주민공청회중인 탄전개발 특별법안에도 지역개발 제한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요존국유림 규제 관계법 완화와, 개발촉진지구 지정면적이 기 지정되었더라고 개발에 필요시 추가확대지정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오며,

만약, 위 내용에 전의된 우리 10만 삼척시민의 간절한 소망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시에는 인근 시군의회, 지역민영회등 사회단체, 주민과 연대하여 관철될때까지 공동대처 할 것임을 친언 드립니다.

2. 제안이유

최근 산림청에서 수종개신을 위한 임목빌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폐광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탄진지역개발 특별법안이 제정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반하는 수종개신사업을 자연생태계 보존, 주변환경문제등의 치밀한 사전감증과 이해관계지역 주민여론 수렴과정없이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본사업계획의 진면 재검토 철회 및 요존 국유림 해제 촉구 진의와

주민공청회중인 탄전개발 특별법안에도 지역개발의 재한요건인 요존국유림규제 관계법 완화 개발촉진지구 지정면적확대지 검토등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함.